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2020년도 교섭·협약 합의서

전 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함)과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 이라 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약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20년도 교섭·협약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차기 교섭·협약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세종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 장 교원 업무 경감

제1조(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지원) 교육청은 학교업무 경감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① 교육청은 신규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길라잡이 등을 제작·배포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사 확대·지원을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부서 간 충분한 업무 공유를 통해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동일 혹은 유사한 문서의 중복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2 장 교권 보호 활동 강화

제2조(교원 사생활 및 교권 보호) 교육청은 교권과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① 학년 초에 교원 안심 변호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사의 인권과 교권 존중을 위하여 학교 전화기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한다.

제3조(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권 보호) 교육청은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 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타 기관 및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관련 교사가 요구할 경우 삭제를 요구한다.

제4조(교권 지위법 홍보) 교육청은 교원지위법(2019.10.17.시행) 세부 내용을 교원과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하고,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홍보영상, 리플렛 등을 제작하고, 연 1회 이상 학교에서 홍보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한다.

제5조(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교육 활동 중 학생에 의해 발생한 교사의 물적·정신적 피해(옷·안경 훼손, 번 아웃 증후군 등)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

제 3 장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제6조(SW교육 및 온라인 교육 강화)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SW연수와 온라인 수업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한다.

- 제7조(학교 밖 교육활동의 지원대책 마련)** ① 교육청은 학교장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각종 체육행사 참여 시 안전을 위해 여행자 보험 등 가입을 권장한다.
- ② 교육청은 공무상 자가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의료비보장)을 가입한 경우 입·통원 의료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 4 장 세종교총 활동 보장 및 지원 확대

- 제8조(교원단체의 활동 지원)** ① 교육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운영비를 세종교총에 지원할 수 있다.
1. 세종교총 사무실 제공 및 시설 지원
 2. 사무실 제공에 따른 물품 지원
 3.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② 교육청은 세종교총이 발송한 교육활동 관련 문서 이첩 요구 시, 이를 검토하여 접수·처리한다.
- ③ 교육청은 단위 학교로 발송한 공개 가능 문서 중 세종교총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한다.
- ④ 교육청은 교총의 원활한 활동과 홍보를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총 배너를 설치하여 링크하도록 한다.

- 제9조(시설제공)** 교육청은 각종 연수 개최 등 세종교총 활동과 관련하여 세종교총이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5 장 유아·보건·영양·사서·특수·상담 교사 근무환경개선

제10조(성과급 지급 기준안 마련) 교육청은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비교과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중등 특수학급 진로직업 교사 배치) 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지원실무사를 배치하여 중등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며, 특수학교에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중등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보 칙

제12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① 교육청과 세종교총은 교섭·협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2020년도 교섭·협약 합의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③ 교육청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 본 합의서의 수정·보완은 양측의 합의를 거쳐 보충 및 재교섭·협약을 통해 체결한다.

부 칙

이 합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